

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신림 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사업유형	계약(공사)		
집행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관리번호	2018-526

1. 사업개요

- 공 사 비 : 36,737백만원(추정가격 26,129백만원, 관급비 7,995백만원, VAT 2,613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공사내용 : 신림 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 신림 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개요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
 규모
 - 공영차고지 : 부지면적 10,232㎡, 관리동·정비동 등(면적 1,743.04㎡)
 - 저류조(지하2) 용량 : V = 35,000㎡
 - 진입도로 : 폭원 10~12m, 연장 153m

2. 감사결과

관련절차 이행 여부

- 투자심사 : 이행(2015. 11. 6.)
- 공유재산 심의 : 이행(2017. 7. 20.)
- 계약심사 : 이행(2018. 6. 5.)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의뢰**(2018. 7. 2.)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적용됨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만, 자격보완을 위하여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 수(5개사 이하)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시공비율 : 토목(89.4%), 건축(10.6%)입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지하 저류조 공사로서 저류용량 8,100㎡ 이상의 실적 보유 업체.
 마.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49% 이상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가능
 - 공동이행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바. 이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일부 적용된 공사로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소유권자와 우리사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방재 신기술 제94호, 신기술 제798호, 신기술 제644호 및 특허 제10-0962671호,

특허 제10-0726350호, 특허 제10-0671412호, 특허 제10-0746879호, 특허 제10-0993880호, 특허 제10-0903212호, 특허 제10-0903211호, 특허 제10-1750176호, 특허 제10-1173045호, 특허 제10-0869815호, 특허 제10-1162569호 특허 제10-1744489호)를 준수하여야 함
 사.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음

① **자격·면허 등의 기준 : 보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 본 사업은 ‘신림 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립을 위한 건설공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자격보완을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격보완과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이라는 문구를 분담이행방식이라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조치
- ☞ 아울러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조치

당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수정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포함)면허를 등록한 업체

② **제한입찰에 관한 사항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종합 공사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이 가능하며, 실적으로 제한할 때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아니 하고 발주(사업) 부서가 기본설계·실시 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본 공사에서 설치되는 저류조의 용량은 35,000㎥로, 공고문(안)에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의 1/3 범위 이내(8,100㎥)에서 그 이상의 실적 보유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어 적정함
 - 또한, 해당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③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보완**

-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 제2항에 따라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공동계약 입찰(공사)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 구성원으로 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0%(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49%)로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고, 서울시 소재 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고 있어 적정함

☞ 다만, 공고문(안)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토록 조치

④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보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본 공사는 공동도급 유형(혼합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의 범위,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5%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 다만, 공고문(안)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

⑤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에 관한 사항 : 보완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0호)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4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적용함

☞ 본 공사는 추정가격이 261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의 '사' 항목을 삭제하도록 조치

□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지출입찰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어 적정함

□ 계약조건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3. 감사의견

□ 관련절차 이행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면허 등의 기준 보완

- 본 사업은 ‘신림 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립을 위한 건설공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자격보완을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격보완과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이라는 문구를 분담이행방식이라는 문구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조치

당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수정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포함)면허를 등록한 업체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보완

- 공고문(안)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보완

- 공고문(안)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에 관한 사항 보완

- 본 공사는 추정가격이 261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의 ‘사’ 항목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